

『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4월 20일

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신 영 근

나. 제안이유

-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 수영장등 사용료를 소비자보호법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-19호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사용료 환불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 등을 규정하고
-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등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역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기하고 대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 하고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

- 시설 사용료 조정(13% ~ 25% 인상)

<수영 월회원>

- 일반인 : 40,000원 → 50,000원(25.0%)
- 청소년,군인 : 34,000원 → 42,000원(23.5%)
- 노인,초등학생이하 : 28,000원 → 35,000원(25.0%)

<수영 일일이용>

- 일반인 : 2,500원 → 3,000원(20.0%)
- 청소년,군인 : 2,200원 → 2,500원(13.6%)

<수영 단체이용>

- 일반인 : 2,000원 → 2,500원(25.0%)
- 청소년, 군인 : 1,700원→2,000원(17.6%)

<헬스>

- 일반인 : 30,000원 → 35,000원(16.7%)

<에어로빅>

- 일반인 : 25,000원 → 30,000원(20.0%)

- 용어 정의 : 별첨

- 사용료 감면 및 할인

- 무의탁노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50% 감액 신설(제9조3항)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86 조 준수

- 1인 2종목이상 신청 시 20% 할인 신설(제9조4항)
- 체육시설 이용자 사용료 반환조건 신설(제11조2항 제1~3호)
-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-19호의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준수

라. 참고사항

-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86조
-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-19호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
- 전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등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역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감액토록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.
- 다만,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(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요율표)의 시설 사용료가 금번 임시회 중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결과 인상안이 부결되어,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